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석유류 정제·저장시설 등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 김소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141호)
- 김소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142호)
- 김소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143호)

2025. 7.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5
1. 지역자원시설세의 의의	5
2. 석유류 정제·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에서 생산·반출되는 석유류 및 천연가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6

I . 제안경위

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 제 안 자 : 김소회의원 등 11인
2. 제안연월일 : 2024. 12. 31.
3. 회부연월일 : 2025. 1. 2.

2.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 제 안 자 : 김소회의원 등 11인
2. 제안연월일 : 2024. 12. 31.
3. 회부연월일 : 2025. 1. 2.

3.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 제 안 자 : 김소회의원 등 11인
2. 제안연월일 : 2024. 12. 31.
3. 회부연월일 : 2025. 1.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환경오염 및 소음 등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음.

그러나 석유류 정제·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은 해당 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외부불경제를 유발하고 있으나,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원자력·화력발전과의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음.

이에 석유류 정제·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에서 생산·반출되는 석유류 및 천연가스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려는 것임(안 제142조부터 제144조까지 및 제146조).

2.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환경오염 및 소음 등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음.

그러나 석유류 정제·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은 해당 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외부불경제를 유발하고 있으나,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원자력·화력발전과의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음.

이에 석유류 정제·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에서 생산·반출되는 석유류 및 천연가스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제10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4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3.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환경오염 및 소음 등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음.

그러나 석유류 정제·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은 해당 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외부불경제를 유발하고 있으나,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원자력·화력발전과의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음.

이에 석유류 정제·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에서 생산·반출되는 석유류 및 천연가스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도록 하

고 이를 조정교부금을 통해 해당 시설이 소재한 시·군에 배분하여 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1항1호 및 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4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함.

Ⅲ. 검토의견

1. 지역자원시설세의 의의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 부존자원 보호·보전, 주민생활환경 개선, 지역개발사업 재원 확보 및 소방사무 소요 제반비용 충당을 위해 과세하는 목적세임. 동 세목은 과세대상에 따라 특정시설분, 특정자원분, 소방분 3가지로 구분되는데, 특정시설분에는 컨테이너·원자력발전·화력발전, 특정자원분에는 발전용수·지하수·지하자원, 소방분에는 건축물·주택·선박 등이 해당됨.

[지역시설시설세의 유형]

구 분	과세대상	표준세율*	세수('23년도)
특정 시설분	컨테이너	컨테이너 TEU당 1만5천원	
	원자력발전	발전량 kWh당 1원	1,884억원
	화력발전	발전량 kWh당 0.6원 ('24년부터 0.3원→0.6원/kWh 인상)	1,052억원
	특정시설분 합계		2,936억원
특정 자원분	발전용수	발전에 이용된 물 10㎥당 2원	82억원
	지하수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 ㎥당 200원	72억원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 ㎥당 100원	
		상기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외의 물 : ㎥당 20원	
	지하자원	채광된 광물가액의 0.5%	44억원
	특정자원분 합계		198억원
소방분	건축물	과세표준(가액·시가표준액)에 따른 차등세율 0.04 ~ 0.12% ※ 화재위험건축물 2~3배 중과	12,062억원
	주택		3,265억원
	선박		17억원
	소방분 합계		15,344억원
징수액			18,478억원

자료: 행정안전부

2. 석유류 정제·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에서 생산·반출되는 석유류 및 천연가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개정안은 석유류 정제·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에서 생산·반출되는 석유류 및 천연가스에 대해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를 항목을 신설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 행	개 정 안
제142조(과세대상) ① (생 략)	제142조(과세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구분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것	2. ----- -----
가. ~ 다. (생 략) ¹⁾	가. ~ 다. (현행과 같음)
<u><신 설></u>	<u>라. 석유류 정제·저장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석유류시설”이라 한다)</u>
<u><신 설></u>	<u>마. 천연가스 제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천연가스시설”이라 한다)</u>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143조(납세의무자) 지역자원시설	제143조(납세의무자) -----

현행	개정안
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다음 각 목의 자 가. ~ 다. (생략)²⁾ <u><신설></u> <u><신설></u> 3. (생략) 제144조(납세지) 지역자원시설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 1. (생략) 2.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납세지 가. ~ 다. (생략)³⁾ <u><신설></u> <u><신설></u> 3. (생략)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생략) ②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 -----. 1. (현행과 같음) 2. -----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석유류시설: 석유류를 정제 · 저장하는 자 마. 천연가스시설: 천연가스를 제조하는 자 3. (현행과 같음) 제144조(납세지) ----- ----- -----. 1. (현행과 같음) 2. -----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석유류시설: 석유류 정제 · 저장시설의 소재지 마. 천연가스시설: 천연가스 제 조시설의 소재지 3. (현행과 같음)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현행과 같음) ② -----

현 행	개 정 안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⁴⁾ <u><신 설></u> <u><신 설></u> ③ ~ ⑤ (생략)	----- -----. 1. ~ 3. (현행과 같음) 4. 석유류시설: 생산량 또는 반출량 리터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5. 천연가스시설: 생산량 세제곱미터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③ ~ ⑤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지방세법」

제142조(과세대상) ① 지역자원시설세는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구분한다.

2.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것

가.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컨테이너”라 한다)

나. 원자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원자력발전”이라 한다)

다. 화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화력발전”이라 한다)

2) 「지방세법」

제143조(납세의무자)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다음 각 목의 자

가.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항·출항시키는 자

나. 원자력발전: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다. 화력발전: 연료를 연소하여 발전을 하는 자

3) 「지방세법」

제144조(납세지) 지역자원시설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

2.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납세지

가.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의 소재지

나. 원자력발전: 발전소의 소재지

다. 화력발전: 발전소의 소재지

4) 「지방세법」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 행	개 정 안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 9. (생략) 10. 지역자원시설세 가. ~ 사. (생략) <u><신설></u> <u><신설></u> 11. · 12. (생략) ② · ③ (생략)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 ----- ----- -. 1. ~ 9. (현행과 같음) 10. ----- 가. ~ 사. (현행과 같음) <u>아. 석유류시설: 석유류시설에서 정제·저장하는 때</u> <u>자. 천연가스시설: 천연가스시설에서 제조하는 때</u> 11. · 12.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시·군 조정교부금) ① 시·도지사(특별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의 27퍼센트(인구 50만 이상의 시와 자치구가 아닌 구가	제29조(시·군 조정교부금) ① ---- ----- ----- ----- -----

1. 컨테이너: 컨테이너 티이유(TEU)당 1만5천원
2. 원자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원
3. 화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6원

현행	개정안
설치되어 있는 시의 경우에는 4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할 시·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1. 시·군에서 징수하는 광역시세·도세(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총액 2. (생략) ② (생략) ③ 시·도지사는 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각각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할 시·군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금액은 같은 호에 따른 시·군 및 제2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구에 균등 배분한다. 1. 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 ----- ----- ----- -----. 1. ----- -----원자력발전·석유류시설·천연가스시설에----- -----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원자력발전·석유류시설·천연가스시설에----- ----- -----. ----- ----- ----- -----. 1. -----원자력발전·석유류시설·천연가스시설에----- ----- ----- -----

현 행	개 정 안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화 력발전소· <u>원자력발전소가</u> 있 는 시·군	----- ----- -- <u>원자력발전소·석유류 정제 및 저장시설·천연가스 제조시 설이</u> -----
2. (생 략) ④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석유류 정제·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 등은 원자력 발전 및 화력발전과 마찬가지로 환경오염, 사고 위험 등 외부불경제⁵⁾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행법상 원자력 발전 및 화력발전에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것과 동일하게 석유류시설 및 천연가스시설에도 과세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석유류 및 천연가스에 대해 신규로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할 경우 유류값 및 도시가스 요금이 인상되어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또한, 이미 석유 정제·저장시설 운영사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 운영사에 상당수의 조세 및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

5) 생산활동이 외부의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함.

여 추가적으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석유 정제 업계 제세공과금 현황]

구분	교통 에너지 환경세 1)	방제 분담금 2)	개별 소비세 3)	교육세 4)	주행분 자동차 세 5)	석유 수입 부과금 6)	석유 판매 부과금 7)	품질검사 수수료 8)
부과 기관	국세청	해양 환경 관리공단	국세청	국세청	지자체	산업부	산업부	한국 석유 관리원
납세자	정유사 ·수입업자	정유사	정유사·수입업자					
과세 대상	휘발유, 경유	유조선 , 기름저 장시설	등유, 중유 등	교통세 부가세	휘발유 , 경유	원유, 석유제품	고급 휘발유 , 부탄	경유, 휘발유 등

주: 각 제세공과금의 세율을 다음과 같음

- 1) 450원/ℓ(휘발유), 289원/ℓ(경유)
- 2) 2.48원/100ℓ(경유), 8.84원/100ℓ(경유 외)
- 3) 90원/ℓ(등유), 17원/ℓ(중유), 20원/kg(석유가스) 등
- 4) 교통세의 15%
- 5) 교통세의 26%
- 6) 16원/ℓ(원유), 16원/ℓ(석유제품)
- 7) 36원/ℓ(고급휘발유), 62,283원/t(부탄)
- 8) 0.469원/ℓ(윤회유 외), 3.33원/ℓ(윤회유)

자료: 행정안전부

[천연가스 생산 관련 제세공과금 현황]

구분	개별 소비세	주변지역 지원금	수입 부과금	안전관리 부담금	관세	품질검사 수수료
부과 기관	국세청	지자체	산업부	산업부	관세청	한국가스 안전공사
납세자	한국가스공사					
과세 대상	천연가스	천연가스 생산시설	수입 천연가스	도시가스용 천연가스	수입 천연가스	제조시설, 배관 등 시설

자료: 행정안전부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외부불경제 효과에 따른 과세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신규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경우 유류가격과 도시가스 요금 인상 및 정유업계와 한국가스공사의 재정적 부담 증가 우려를 이유로 신중한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33